

대한장연구학회 연구비 지급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 적)

본 규정은 장 질환에 관한 학술발전을 위하여 장 질환 학술연구에 공헌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명 칭)

본 연구비의 명칭은 "대한장연구학회 연구비"라 한다.

제 3 조 (지급대상)

본 연구비의 지급대상은 소장 및 대장 분야의 연구로 2 편으로 한다. 단, 다기관연구의 경우 공동으로 두개의 연구비를 동시 또는 한 연구비를 분할하여 수혜 할 수 있다.

제 4 조 (연구비)

본 연구비는 각각 1,000 만원으로 하여 전액을 대한장연구학회 총회에서 지급한다. 단, 다기관연구의 경우 두 개의 연구비로 2,000 만원까지 동시 또는 한 연구비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 2 장 후보자 자격과 조건

제 5 조 (지급대상 자격)

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대한장연구학회 평생회원 중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회원으로서 5 년 이내에 대한장연구학회지 Intestinal Research 에 제 1 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1 편 이상의 논문의 게재한 자로 학술적 공헌 도가 높은 연구 계획이 있어야 한다.

제 6 조 (연구비 지급조건)

1. 동일 연구 과제(혹은 같은 내용)로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 또는 학술상을 지급 받은 과제 및 학위 논문 과 제는 심사에서 제외한다.
2. 본 연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한장연구학회 평의원 2 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
3. 연구비 수혜는 1 회 수여 후 3 년 이내에는 다시 받을 수 없다. 단, 다기관연구는 예외로 한다.

제 3 장 후보자 선정

제 7 조 (신청기한 및 접수)

본연구 계획서의 제출은 대한장연구학회 사무실로 하여 우편,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마감일을 준수해야 한다.

제 8 조 (신청절차)

연구비 신청은 대한장연구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
연구비 신청에 있어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신청서 (소정양식)
2. 추천서
3. 이력서 (사진 - 반명함판 부착)
4. 3 년간의 연구업적목록
5. 연구계획서 및 서약서
6.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(저서 및 논문 등의 목록)

제 9 조 (심사위원회)

1. 연구과제 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.
2.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회장과 부회장 2 인, 회장이 위촉한 5 명의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8 명으로 구성되며, 임기는 대한장연구학회 회칙이 정한 임원의 임기에 따른다.

제 4 장 연구비 지급

제 10 조 (연구비 과제 결정)

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과제와 연구자는 대한장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 초록집에 공고한다.

제 11 조 (연구비 지급)

연구비는 대한장연구학회 학술대회 정기총회에서 지급한다.

제 5 장 연구비 수혜자의 의무

제 12 조

1. 연구 결과는 연구비 지급 2 년 이내 대한장연구학회 학술대회에서 구연 발표하고, 결과 논문을 3 년 이내에 Intestinal Research 또는 SCI (SCI-E) 등재 학술지에 게재 또는 게재 확정하여야 하며, 논문 별책 5 부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한을 1 년 연장할 수 있다.

2. 수혜자가 본 규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 금액 전액을 반납함을

원칙으로 한다(또한 같은 연구 과제로 타 연구비와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에도 지원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).

제 13 조

1. 게재 논문에는 ○○○○년도 대한장연구학회 ○○ 연구비(20○○-○)에 의하여 수행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밝 혀야 한다. "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○○ grant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Intestinal Diseases for 20○○ (20○○-○)."

2. 수혜자가 본 규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 금액 전액을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부 칙

제 14 조

1.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일반 관례나 심사위원회의 결의로 별도 내규를 정할 수 있다.

2. 본 규정은 대한장연구학회 평의원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하며,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.